KOSHA GUIDE

C - 45 - 2012

- ③ 재키의 시험성과 합격품목 여부 및 마모, 작동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야 한다.
- ④ 언더피닝구간 등의 가설구조는 응력계, 침하계, 수위계에 의한 주기적 분석의 변위 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⑤ 언더피닝구간 등의 토사굴착은 사전에 단계별 순서와 토량을 정확하게 산 정하여야 한다.
- ⑥ 기계·장비 굴착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⑦ 굴착중 용출수 및 누수 발생시 급결제 등의 방수 및 배출수 유도시설을 강구한 후 굴착 및 기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8) 터널내에는 화약이나 유류를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차량 및 기타 장비는 터널 입구로부터 먼 곳에 주차 및 배치시켜 두어야 한다.
- (10) 터널 입구에는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5.2 화약류의 운반 및 처리

- (1) 화약류는 관계기관에서 일일 수령하여야 하며 사용후 잔량은 반납하여야 한다.
- (2) 화약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불출 및 반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화약류 임시보관소는 화기 및 누전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 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화약류의 분실 및 손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용기에 분리하여 넣고 건전지 및 노출된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전력선 등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